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단52102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원아라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815,680원 및 그 중 19,585,112원에 대하여는 2021. 6. 17.부터, 14,031,929원에 대하여는 2021. 6. 23.부터 각 2021. 8.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4. 14. 접수 제109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3,815,680원{미회수 대위변제금 33,617,041원(보증1 미회수 대위변제금 14,031,929원 + 보증2 미회수 대위변제금 19,585,112원) + 법적절차비용 금 198,452원 + 확정지연손해금 187원} 및 이 중 보증2 미회수 대위변제금 19,585,11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6. 17.부터, 보증1 미회수 대위변제금 14,031,92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6.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8. 27.까지는 약정이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자금 사정 등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이틀 후인 2021. 4. 16. 피고 A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여부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 A의 채무 내역, 피고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별지